

소액포상금 지급결정 및 산정기준

1. 소액포상금 지급결정

- 가. 소액포상금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1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조사·심리기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.
- 나.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또는 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액포상실시안을 불공정거래조사·심리기관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.
- 다.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가담한 정황이 의심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2. 소액포상금 산정기준

(단위 : 만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포상금 지급액	500	400	300	200	100

주) 포상금은 각 신고별 신고등급을 기준으로 위 표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·확정한다.

- 1. 신고인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구체성 및 충분성
- 2.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수법 인지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
- 3. 기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기여한 정도 등